

**자치법규**

[예규]

◆ 서울특별시의회 예규 제127호

**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**

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 원 철 인  
2019년 1월 24일

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

- 1. 폐지이유  
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의회예규(제120호)인 「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(이하 “규정” )」에 의거 처리하였으나, 시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여, 2018. 7. 19. 「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·시행됨에 따라 해당 규정의 필요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
- 2. 주요내용  
「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」을 폐지함
- 3. 참고사항
  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  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  - 다. 협의 : 해당사항 없음
  - 라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